

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 위험물의 격리기준 (제30조의4제2항 관련)

			포장형태 위험물																
			위험 물의 분류	1.1 1.2 1.5	1.3	1.4	2.1	2.2 2.3	3	4.1	4.2	4.3	5.1	5.2	6.1	6.2	7	8	9
고체화학위험물질	고체위험물질	가연성 고체	4.1	4	3	2	2	2	2	X	1	X	1	2	X	3	2	1	X
		자연 발화성물질	4.2	4	3	2	2	2	2	1	X	1	2	2	1	3	2	1	X
		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	4.3	4	4	2	2	X	2	X	1	X	2	2	X	2	2	1	X
		산화성 물질 (작용제)	5.1	4	4	2	2	X	2	1	2	2	X	2	1	3	1	2	X
		독성 물질	6.1	2	2	X	X	X	X	X	1	X	1	1	X	1	X	X	X
		방사성 물질	7	2	2	2	2	2	2	2	2	2	1	2	X	3	X	2	X
		부식성 물질	8	4	2	2	1	X	1	1	1	1	2	2	X	3	2	X	X
		그 밖의 위험 물 질	9	X	X	X	X	X	X	X	X	X	X	X	X	X	X	X	X
	고체화학물질		MHB	X	X	X	X	X	X	X	X	X	X	X	X	3	X	X	X

숫자 설명표		
1	분리적재(Away from): 같은 화물창이나 구획 또는 갑판 상으로 운송될 경우 최소 3미터의 수평 격리를 하여야 한다.	
2	격리적재(Separated from): 갑판 아래 적재 시 다른 화물 창 또는 다른 구역에 격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간 갑판이 내화성 및 내액체성인 경우에는 다른 구획에 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	
3	구획실 분리적재(Separated by a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):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완전한 구획 또는 화물창에 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갑판이 내화성 및 내액체성이 아니라면 중간의 완전한 구획에 의한 세로 방향의 격리만이 인정될 수 있다.	
4	구획실 격리적재(Separated longitudinally by an intervening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): 수평방향의 완전한 구획 또는 화물창에 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.	
X	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」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체화물 개별화물 일람표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격리한다.	
[그림 설명] 산적 물질 상호 반응물을 포함한 포장 내액체성 및 내화성 갑판 ※ 수직선은 화물구역 간의 가로 방향 수밀격벽을 나타낸다.		